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5- 호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. 3. 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도서관의 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비도서 종류 변경과 관외대출 권수를 확대하고, 민간위탁기관의 심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례를 준용하며,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삭제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비도서 이용 중 정보환경 변화에 따라 비치하지 않는 비디오테이프 등을 삭제하고, 어린이전자정보열람실 폐관을 반영(안 제2조)
- 나. 도서관 이용 제한시 저작권법 준수, 유해정보 검색 제한 등 추가(안 제3조)
- 다. 관외대출 가능권수를 3권에서 7권으로 확대(안 제5조)

라. 민간위탁기관의 심사 및 위탁의 취소 조건 등을 삭제하고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함.

(안 제6조~제8조, 제12조, 제14조~제15조)

마. 도서관 이용 관련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 삭제

(별지 제1호~제6호)

### 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(참조 : 교육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(<http://www.sdm.go.kr>) 메인화면 상단(전체메뉴-구청소식-공고-입법예고)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주소·성명(단체의 경우,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 : 120-1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, 3층  
(홍은2동)

※ 기타사항 문의 : 전화 : 330-1966, FAX : 330-8713